[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자료집

2020.1.7.(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목 차

Ⅰ. 발제문 1

1. 예술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강윤주) 1
2.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령 및 검토가능 방향 공유(송윤석) 9

Ⅱ. 지정토론문 17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인 의회' 로 재구성하자!(정윤희) 17
2. 이제는 합의와 실천이 필요할 때(정진세) 24
3. 문화예술계 구성원의 얼굴과 닮은 위원 선출이 필요하다(신민준) 28
4. 공유자원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김상철) 32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기관이 되길 원하시나요?(김기봉) 38
6. "적극적 조치" 의 필요성: 쿼터제 도입에 대해(강윤주) 42

발제❶
예술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

강윤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

발제❶ 예술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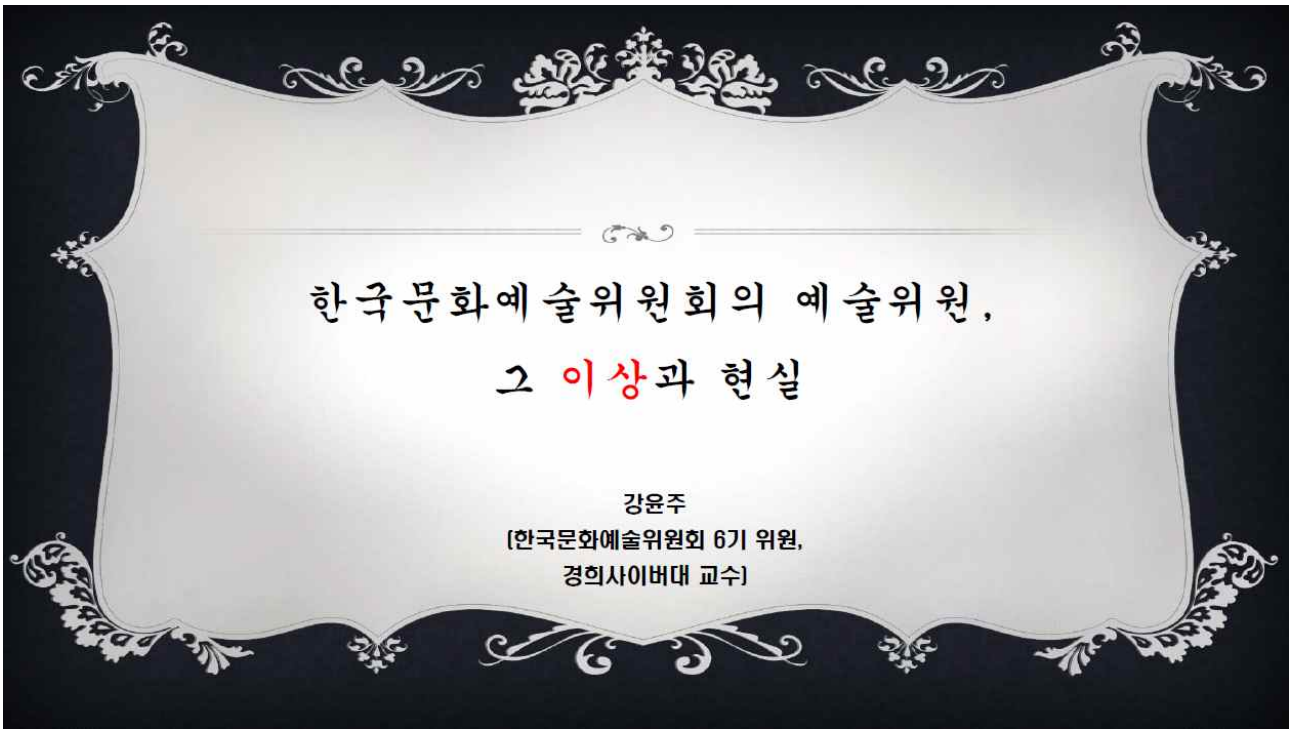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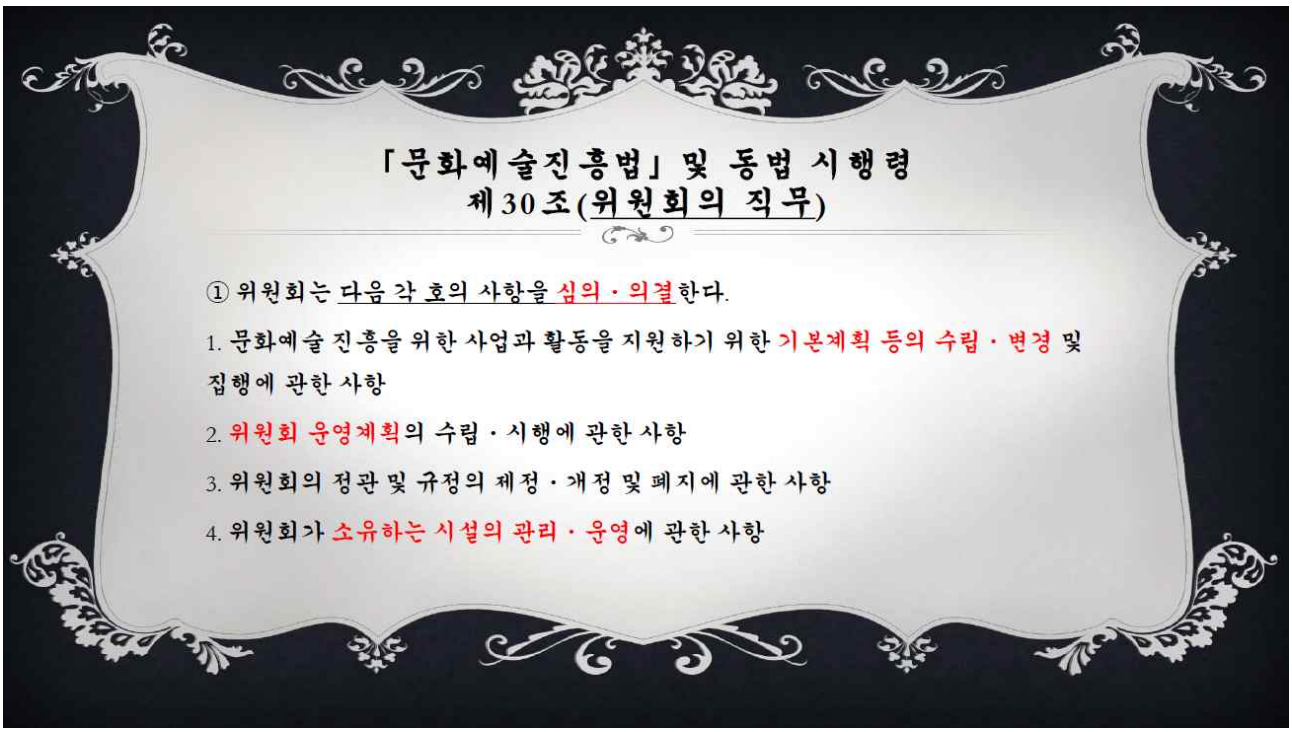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소위원회 운영 규정

법 제3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직무) ① 소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 제안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2.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및 사업 운영의 모니터링, 사후평가. 단, 심의, 모니터링,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

3. 위원장이 요청한 사업의 집행에 대한 자문

4.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평가

②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부담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지원정책 및 심의방향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예술위원으로서 "실제로" 했던 일

1. 한 달에 한 번 정기위원회 참석

1) 평균 10개의 안건과 10개의 보고 내용 소화: 평균 회의 시간 3시간 이상

2. 한 달에 세 번 소위원회 참석

1)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한 달에 두 번

2) 예술가치 확산 소위원회: 한 달에 한 번

3. 개별 사업에 대한 개선안 제안: 위원 제안으로 사업 담당부서와 개별 미팅

비상임위원 직책수행경비 및 전체회의 수당

1. 비상임위원 직책수행 경비: 870,300원 (세후)/월
2. 위원회 전체회의 수당 및 교통비 보전수당: 241,750원 (세후)/회(월)
3. 소위원회 수당: 145,050원/회

예술위원회 사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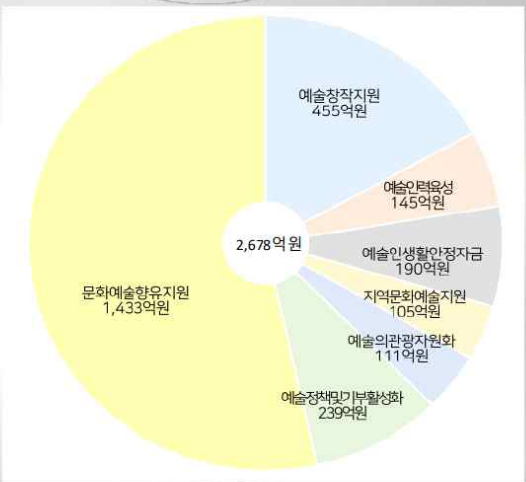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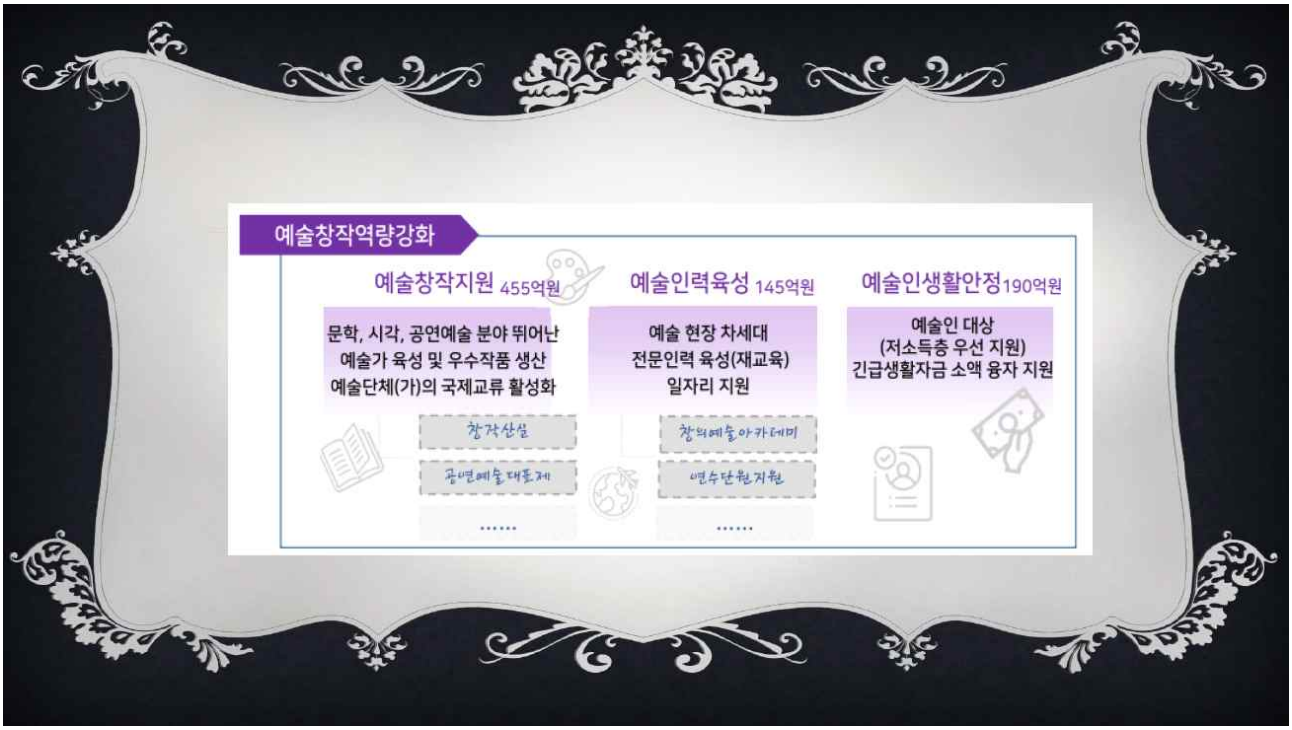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455억원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 뛰어난 예술가 육성 및 우수작품 생산
예술단체(가)의 국제교류 활성화
창작산실
공연예술 대표제
.....
예술인력육성 145억원
예술 현장 차세대 전문인력 육성(재교육) 일자리 지원
창의예술아카데미
연수단원지원
.....
예술인생활안정 190억원
예술인 대상 (저소득층 우선 지원) 긴급생활자금 소액 융자 지원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05억원
지역 문화예술계 역량 강화 및 지역간 예술교류 활성화
공연장상생우수단체지원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예술의 관광자원화 110억원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 진출과 전통예술 우수 콘텐츠 지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통예술자원브랜드상설공연
.....

예술위원 응모 자격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여기에 덧붙여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2년 간의 임기 동안 자신의 생업 중 반 정도는 포기하더라도 예술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각오할 수 있는 자

2. 하루 전에 날아드는 250쪽 정도의 회의 자료는 거뜬히 소화해내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몇 시간 안에 모두 파악할 수 있고)

3.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 맑은 정신으로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은 갖춘 자

발제❷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및 검토가능 방향 공유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발제❷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령 및 검토가능 방향 공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선임절차 개선을 위한 1차 공론회

2019.1.7(화), 예술가의 집

문화체육관광부

목차

01 기본방향

02 관련 법령

03 성명내용에 대한 문체부 입장

1. 기본방향

1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기본방향

- (단기)현행 법률 하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적극조치를 통한 7기위원 선임 실시
- (장기)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논의 후 추후 개정절차에서 반영
- 당장의 법령개정은 20대 국회임기, 법령개정절차 등을 고려했을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1차 공론화(1.7)	2차 공론화(1.20)	3차 공론화(1.30)	후속조치(2월~)
· 문체부 발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 제안사항에 대한 문체부 입장 전달 · 자유토론	· 제안사항에 대한 문체부 입장 전달 · 장기 추진사항 발굴 · 7기위원선임 시 반영사항 최종정리 * 필요시 추가논의	· 위원선임 절차 진행 · 법령개정 등 논의

2.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3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2.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4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5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6

현행법령에 따른 위원선임 절차 시 고려사항

범주	고려사항
추천위원회 구성권한	○ 법률에 의해 추천위원회의 최종 위촉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 ○ 세부적인 구성절차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추천위원 모집방식	○ 추천위원 모집에 있어 문화예술단체 '등' 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 - 동 규정에 의해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추천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후보자 모집 및 추천위원회 추천 방식	○ 후보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만 모집 ○ 추천위원회는 최종후보자를 2배수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천하되, 그 대상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모집된 후보자 내에서만 가능 -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불가함 - 법률자문 및 타 규정들에서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할 때, 공개모집만을 도입한 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하에서는 별도 시행령 개정 없이 문화예술단체 등의 추천은 불가능

3. 성명내용에 대한 문체부 입장

7

1)성별과 청년세대의 대표성 확보

성별, 연령 균형을 갖춘 위원회 구성

- **성별, 연령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 진행**
- **성비·연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논의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에서 제공**
- **할당제(쿼터제) 도입은 추가 논의·합의 필요. 합의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개정 진행**

  * 헌법상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한 근거 마련

3. 성명내용에 대한 문체부 입장

8

2) 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확대

단체만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기존 방식 철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근거, 법인격을 갖춘 단체들에게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
-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회 개방성**(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등) **확대방안 논의**

  * 행정력 한계 및 추천권 부여 명확한 기준(범위) 설정 등을 고려 필요

9

3) 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대

추천위원명단과 심의기준 공개

-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향후 선임절차에서는 추천위원 명단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개시기**(사전/사후)**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
  * 사전공개 시 **청탁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 우려** VS **오히려 공정한 추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 모두 존재
- **심의기준은 ▲관련 분야 전문성, ▲정책이해와 실천능력, ▲소통·통합 능력이 있음. 세부내용은 공론화 통해서 조정 가능**

10

4)공개검증 방식 지속 필요성

공개검증 방식의 철회 또는 개선 필요성

-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폭넓게 검토하고자 실시**
  (사전 후보자공모 시 동 내용 포함)
- **▲개인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 등 운영과정 상 어려움 존재**
- **공개검증 방식의 지속여부, 구체적 진행방법 등 논의**

3. 성명내용에 대한 문체부 입장

11

5)기타사항

성평등 문화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 논의되는 사항 중 반영가능사항 검토. 동 내용은 문화예술행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확대 논의 필요

문화예술진흥법령 개정 공동기구 조성

- 2020년에 문화예술진흥법 틀에 대한 재검토 예정.
- 현재 사전연구 진행 중이며, 이후 쟁점들에 대해서 학술대회 연계 토론회, 온라인 토론을 활용한 예술인들과의 논의, 공론화 실시

THANK YOU

지정토론❶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인 의회'로 재구성하자!

일단 비상임 위원 선임 개정부터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원회 위원장

지정토론❶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인 의회'로 재구성하자!
일단 비상임 위원 선임 개정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후보자 공개검증에 대한 성명서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 위원 후보자 2배수 공개에서 드러난 "여성 후보 0명" 등 문제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공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싸워온 우리 예술인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하나의 성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만약 최종 후보자 2배수 사전 공개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최종 선임된 '신임 여성 위 원 0명' 7기 위원회 출범을 목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비상임 위원 후보 사전 공개> 절차가 위원회 구성 과정에 작동하는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였다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 논란은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

예술인들이 부조리한 문화 권력의 작동을 견제하고 문화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여 처음 도입한 <후보자 사전 공개 및 검증>은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안이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젠더, 연령, 장르 생태계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적으로 방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여성 후보 0명'의 결과는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위원추천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변화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위원회 선임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위원 선임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이유로 위원 선임 과정개선의 책임성을 온전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여성 위원 후보 0명'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위원 선임 과정을 성찰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변화된 예술 생태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행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원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젠더와 세대별 균형을 갖춘 후보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모방식의 개혁에 대한 구체 계획과 위원추천위원회 심의과정의 전면적인 투명성 확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하라!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취지이자 시대적 과제인 '예술인의 의회'를 실제화 해내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개방성과 참여구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블랙리스트와 미투 등에 대한 검증 수준을 넘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조직상의 예술인에 대한 개방성과 공개 정책토론까지 공론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2019년 11월 15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 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지원기관이며 합의제 민간기구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법, 제도, 행정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한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시설 분리.독립('10년) 및 재통합('14년), 블랙리스트 사태('15~16년)등 기관 일련의 문제들을 겪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의 고갈과 기금의 존속여부의 불확실성, 선임된 위원의 합의제 정책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재했고 예술현장과의 소통은 요원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위원회 선임문제는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줄곧 쟁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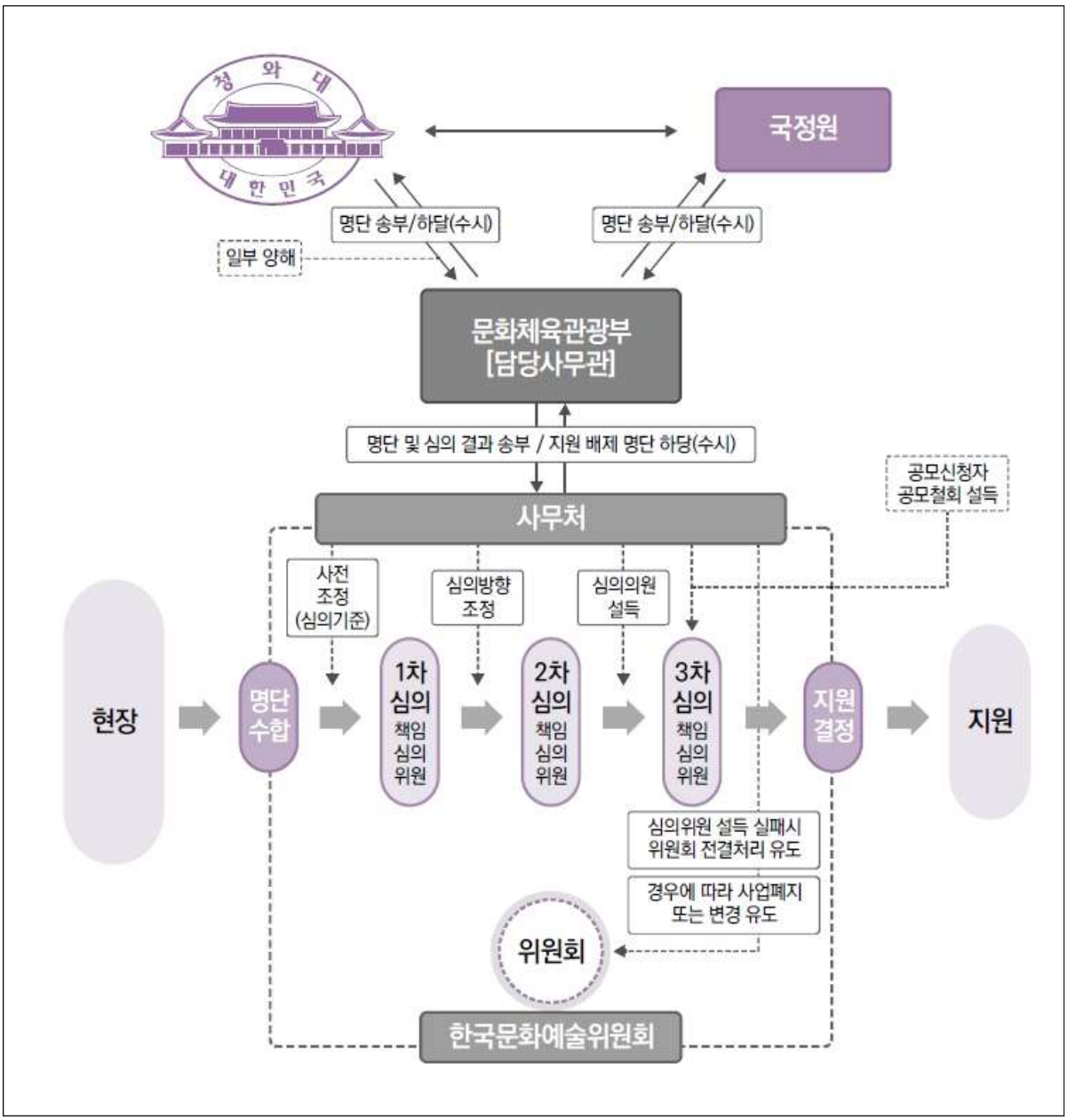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작동구조>[1)]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동한 구조를 살펴보면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반영되고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 합의제 기구로서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할 위원회가 예술지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조력하거나 방조했다. 따라서 위원회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더욱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7기 위원회 선임 과정 중 후보공개검증 결과 신임 여성위원 0명이 드러난 것은 '후보공개검증' 절차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를 수면위에 떠오르게 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문체부가 적극행정으로 해결방법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나섰다는데 의미를 찾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형식적, 부분적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에 의거한 위원회 선임절차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기관의 독립성, 예술 현장에 권한을 높이는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적 귀속력 확보, 위원회 구성, 책임과 역할, 예술정책과 행정의 관점 전환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

1) 출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권

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예술인 의회의 지향점을 갖고 국가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개선권고안

과제 구분	세부과제	비고
예술 지원정책의 인식전환과 원칙 수립	새로운 예술지원체계의 목표 및 방향설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TF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개방성, 투명성,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의 가치가 민주적으로 구현되는 구조 -다양한 의제/장르/주체 중심의 행정적 귀속력이 있는 소위원회 활성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위상과 역할 재정립 -「공공기관운영법」제외[2], 호선제 도입,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이관 외 , 기관명 변경,	
	예술 현장과의 협치기반 마련 -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형 사업운영, 사무처직위 개방직 외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 - 심의제도 혁신, 회의 운영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외	
	사업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확보 - 사업구조개편,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재정구조의 독립성과 안전성 강화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검토 및 추진: 국가예술위원회의 설립 추진단 구성 및 단계별 사업추진 외	-법 개정등 장기적 과제는 로드맵을 세워 실행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번 '비상임위원 선임 절차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위원회 구성의 이슈로만 한정하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에 다양한 주체가 평등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예술현장에 좀 더 많은 권한 분배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제안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정책입안-집행과정)의 경직성과 비문화적 행정체계를 넘어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가치판단과 평등한 협력을 위한 협치 구조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높은 벽을 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과의 접점을 다양한 공론장에서 찾고 여기에서 위원구성과 역할, 선임 절차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조와 미션에 대한 혁신안은「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과「한국예술위원회 TF」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를 중심으로 이번선임절차를 실행했다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자리가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번 신임비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파행적 결과를 야기 하게 된 이유는 이를 수행해야 할 행정의 저항감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고 이를 통해 문제가 뚜렷하게 부각되며 감추어져 있던 사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문화예술현장이 파행적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합의제 기구로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체질 전환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만큼 현안에 대한 소통창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의 발제문과 더불어 오늘의 논

2)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의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지만 현재 위원선임절차 및 결정권한, 법 개정 등의 장기적 사안의 책임은 문체부에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다양한 주체로서의 몫으로 함께해야 한다.

합의제[3] 민간 정책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당면과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은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 투명성이 민주적 역량으로 구현되고 보장되는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현장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협•단체 중심의 대표성, 전문성의 피상적, 관행적 접근은 현장의 요구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가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근본적 특성을 고려하고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가능태로서 문화정책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예술-예술가를 문예 진흥을 위한 관리대상으로 한계 짓는 문화전문기구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

협•단체가 문화예술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수많은 정보의 확산, 고도화된 빠른 이동, 시공간을 재현하는 기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예술과 사회의 관계 또한 다양하다. 소규모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조직화되는 예술현장- 예술가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라는 사고를 넘어, 예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면해있는 자원과 권한의 독점이라는 불신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호선제로 선출하고, 위원 선임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권리를 보장하며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단위와 추천사유 공개/ 추천위원 명단공개 및 추천사유 공개/ 후보자 공개검증(미투, 블랙리스트 전력 검증 이상으로 문화예술계 문제 전반으로 검증범위 확대)/직무공개발표(역할에 대한 이해)등의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추천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문화예술계의 모든 조직형태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위원자격을 경력10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경력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전달체계에 속해있는 공공기관(유사기관 포함)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한도 필요하다. 문화 일반 영역에서 지역전문가의 자격으로 선임되는 경우로 파악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간의 관-관 협치 제도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일이다.

위원회가 단체 대표, 명망 있는 예술가, 교수, 전직 공직자로 구성되었던 지난 관행을 넘어, 젠더, 청년, 지역 등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위원의 경우 30%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7기 위원 선임은 시행령을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생물학적 성별로 쿼터를 두는데 머무는 것은 다양성을 내제화하는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지식공유의 시대적 조건과 박근혜 국정농단을 경험한 문화예술인들은 위원회의 권한과 자원 독점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SNS 공론장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들과 연결하며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문화 전문기관의 정책-지원 전달체계의 수행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민간 합의제 정책기구에서 의결과정에 권한이 위원 또는 위원회에게 제한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현장의 요구들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은 어디에 있었나? 복기해 보면 덕망 있는 전문가로서

3) 「정부조직법」제5조,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1조에 따르면 합의제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 또는 행정이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형태

위원회는 합의제 정책 기구의 이해가 미흡했고 예술현장과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쟁점과 이해가 부족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엘리트로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심각한 책임 방조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예술 현장을 능동적이며 실천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소통하고 합의하는 협치의 파트너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역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국가중심의 문화정책전달체계는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생태계에서 권한들을 독점하는 구조이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좀 더 예술현장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현장과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한다면 각각의 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다층적 협력 체계를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문화예술생태계와 문화정책을 매개하여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제를 생산하고 사업화하는데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반영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문화예술현장의 의견이 의사결정구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장르/의제/주체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하면서 행정적 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견제와 협력 관계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위원선임절차 개편을 위한 공청회' 이외에 장르, 의제, 주체별 공론화 자리를 제안한다. 쟁점과 시대적 패러다임(예술인 활동이 협 단체 중심에서 소규모 그룹, 개인중심의 느슨한 네트워크로의 변화)에 따른 대표성과 전문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장르->의제 전환, 예술 현장으로의 권한 분배 등 혁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재정립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누구여야 하고 역할 책임과 권한은 어떠한지 각 현장에서 공유하고 논의 하는 과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인이 주인이 되는 예술인 의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누락된다면 소수가 독점하면서 벌어진 이전의 과오들을 반복할 수 있다.

짚고 가야 할 쟁점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등치될 수 대표성을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는 "민주주의란 정치 엘리트 간의 경쟁이다"라며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대중)을 수동적 지위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했다. 막상 선임된 권력(의원회)들이 자본에 포섭되거나 문화권력으로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도하며 과연 예술현장을 대표하여 예술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며 공동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애써왔는지 매우 회의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도 실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과두제(oligarchy)'에 불과하다. 큰 권력과 지위, 재산을 가진 엘리트들-사회 기득권층이 '선거'또는 '추천'등 유사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독점한다. 우리사회의 연대는 아직 기계적 연대(학연, 지연, 혈연, 종교)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거기간이 되면 협•단체들은 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문가로 추천을 받거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선거기간이 되면 이런저런 계파-패거리 논리에 충실하다. 그들은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지만 실은 선거기획사에 불과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다. 이는 중요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현재 국내 정치가 정당 간 교착상태를 야기하며 산적해있는 국정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블랙리스트 이후의 예술계는 여전히 '비토크라시(vetocracy)' 갑갑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등장하고 권력과 자원, 공직까지 독점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에서 '규정'을 논의할 때 인간이 만든 규정에 대한 구속력을 강조하는 현상은 매우 모순적이지 않나. 가장 최상위의 규정인 헌법도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헌법은 각국마다 다르며 보

편적이지 않다. 인간 이성의 최고수준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아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순간 예술의 자율성에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는 과정들은 '의제중심의 협치'에 참여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문화예술계 이해관계자간에 상호의존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경험이 형성되면 동질성[4]에 근거한 기계적 연대를 넘어 새로운 결속력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집합의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중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로서 현장이 나서주길 바란다.

4) 전통적인 사회구성 원리와 동질성에 근거한 기계적 연대. 기계적 연대는 혈연 지역 학연 종교 등의 문화의 동질성에 기초하는데 지역사회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담합의 원인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기계적 연대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세력화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지정토론❷

이제는 합의와 실천이 필요할 때

정진세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지정토론❷ 이제는 합의와 실천이 필요할 때

지난해 11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공개검증을 위한 2배수 후보가 발표되었다. “전원 남성으로 평균나이는 56.1세이며, 연령대는 60대 5명, 50대 10명, 40대는 1명으로 파악” 된 명단의 실체와 그에 대한 추천위원회의 변은, 이를 읽는 이로 하여금 참담함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2018년의 미투운동으로 바뀐 것이 과연 무엇인지, 2020년대의 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얼굴에서 새로움을 찾기가 이토록 어려운지, 이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물론, 개개의 후보자 역량이나 전문성, 위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사태도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 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많은 예술가들의 변화의 바람이 가닿지 못하고 멈춰버린 곳이 바로 ‘여기’였음을 실감했기에, 그에 대한 충격이 좀 강렬했던 셈이다.

정신을 차리고 자료를 훑어보니 A4용지 두 장에 불과한 문서 안에는 예술계의 온갖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젠더/세대 대표성 문제를 비롯하여, 추천위원회의 깜깜이 구성과 위원선정의 구시대적 판단기준, 문체부의 인사권 관리와 이에 따른 문예위의 자율성 침해, 공공성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 명예직으로 여겨지는 자리 등등이 그러하다. 더불어 장르를 대표했던 위원들의 전횡과 중도하차 등의 아픈 기억까지 떠올랐다. 본 사안은 지난 2010년대 예술계의 이슈들이 총 망라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의 집합체였던 것이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하 성반연)은 2018년 2월, 연극계 미투운동과 함께 출범하였다. 미투운동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겪는 성폭력과 성차별이 얼마나 촘촘하게 여성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며 그것이 다시금 남성 중심적 권력구조를 재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한 시간을 함께 겪으며 성반연은 연극계 안에서의 남성 지배의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성평등의 필요성을 일깨우면서 연극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에 문체부의 문예위 위원후보 공개이후 성반연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11월 19일자로 제출된 성명서에는 77개의 단체와 464명의 개인의 연대 서명이 담겨있다. 이는 문예위의 변화를 바라는 현장 예술가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반연은 문체부와 문예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 *- 한국 문화예술계에는 남성'만'이 종사하는가? 최종 후보 명단에는 왜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 *- 최초 후보자들 중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성은 없었는가?*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항 3호에는 “남, 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남성과 여성의 균형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의 균형 또한 반영하지 않았는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위원 후보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30조를 제공하였는가?*

성반연은 성명서에서 남성의 ‘과대대표성’과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함께 따져 물었다. 지금과 같이 추천위원회의 2배수 후보자가 ‘모두’ 남성인 경우에는, 현재의 예술계의 대표자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규범 체계가 지극히 남성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여성이 이러한 공적영역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루 지적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쪽의 성별의 문제만을 논하는 경우에는 논의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다시 말해, 남성후보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점에서는, '중년-남성-예술가'에게 과하게 베풀어지는 - 예술계의 관행과도 같은 - 인정과 보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여성후보가 (있었음에도)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 남성에게라면 자연스럽게 돌아갔을 - 인정과 보상이 전혀 없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성후보를 배려할 경우에는 여성의 무임승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실상, 그간의 남성에 대한 대표성 부여가 과다하게 이뤄졌음 또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그간 무임승차를 해왔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이번 사태를 통해 당사자인 예술가들의 성찰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연극 장르를 대표했던 전전 위원은 협회 회장이라는 경력을 통해 예술위원에 입성했으나,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예술위의 기금을 유용하였다. 전 위원 또한 협회 회장이라는 경력을 통해 예술위원에 입성했으나, 위계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도하차했다. 이들은 - 이번에 공개된 추천위원회의 소견에서 그러했듯이 - 전문성과 대표성, 다수의 경력, 균형감각과 실행의지 등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연극장르를 대표했던 이들은, 동료 혹은 후배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린 예술가의 인권과 존엄을 해친 부끄러운 사례의 대표자가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촛불혁명과 미투운동 이후 변화의 기로에 놓인 연극계의 '중대한 시기'를 놓쳐버린 점이다. 시대적 사명과 요청을 방기해버린 연극장르 예술위원으로 인해 연극계 적폐청산과 미투운동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단위의 예술가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법인의 성격을 가진) 단체에 속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독립프로듀서, 드라마터그, 프로그래머, 기획자, 활동가, 비평가, 디자이너 등 저마다의 역할을 하는 개인의 연대와 작은 단위의 참여가 이번 성명서의 주를 이루었듯이 말이다.

이런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선임될 예술위원은 시대적 가치 및 변화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연극계는 세월호 사건, 촛불혁명, 미투운동 등을 거치며 삶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대표성'이며,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특정하게 주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소통능력이고, 이해관계를 이용한 외교적 합병이 통합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발상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외려 이러한 소통의 방법론은 공정하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다.

이번 공청회는 문예위원 후보검증 사태에 심각성을 느낀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문체부의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나눠 현실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실천의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28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환영할 만하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간 명예직 위원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대표자를 상대하는 것에 문체부도 문예위도 이골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던 2005년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2020년 체제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첫 단계로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위원선임 과정을 중단하고 다시 새롭게 논의하게 된 이 시점에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혹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적극적 조치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특정집단 혹은 계층에 대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며, 그에 대한 예술계 다수의 '지지'와 '동의'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이른바 추천위원회 구성과 적은 수의 여성후보 지원, 그리고 추천된 여성후보 없음의 상황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과소대

표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후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한편, 이러한 참여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장르당 단 한명의 위원을 선발하는 경우만 있기 때문에, 동수 구성이나 할당제 구성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섭과 양해, 합의가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를테면 (법적인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각각 돌아가면서 장르의 대표위원을 맡는 임시적 순번제 방식이나, 상징성을 위해서 이번 7기위원들의 여성비율을 특정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예술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합의를 요한다. 제도화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의에 입각한 합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정치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라는 개념을 빌어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다. 크리티컬 매스란 핵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양, 즉 새로운 상황 혹은 과정으로 돌이킬 수 없이 전환되는 이륙단계로 설명된다. 변화를 위한 일종의 임계치인 셈이다. 정치적 대표성으로 설명하자면, 소수집단이 일정 비율이상 그룹을 형성하면, 잠재적으로 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결국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이다. 의사결정 집단 구성비의 변화로 인해, 해당 집단의 문화가 바뀌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바, 크리티컬 매스(일정 비율의 인원수)가 크리티컬 액트(act)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번 성반연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크리티컬 매스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후보자 공개검증을 위한 2배수 후보가 발표되었을 때의 참담함과 무력감은 현장의 많은 예술가들의 성명서 참여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문체부의 실행으로 인해 다소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계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현장 예술가들의 동의, 합의, 지지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크리티컬 매스가 의사결정 단위인 예술위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게 된다면, 한국의 예술계는 분명,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이번 문예위원 선임에 있어서 애초에 여성대표자의 적극적인 추천과 압도적인 후보자 반영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는 한국사회의 전 영역에 긍정적 파급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진보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예술계의 진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위급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적은 문체부와 문예위의 상황 또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할당제의 효능이 그러하듯,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과거에 대한 보상과 미래에 대한 기획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토론문에 다소 막연한 바람과 이상적인 기대를 담았음을 고한다. 우리 예술계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선제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성폭력 반대와 성평등을 위한 행동의 종착역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이 가닿는 지점일 것이다.

지정토론❸

문화예술계 구성원의 얼굴과 닮은 위원 선출이 필요하다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

지정토론❸ 문화예술계 구성원의 얼굴과 닮은 위원 선출이 필요하다

□ 들어가며

지난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7기 위원 선임 과정에서 2배수로 선출된 후보자들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것에 대하여 문예위 산하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내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주요 근거는 남성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문화예술계에 존재하는 여성들을 대변하지 못하며, 이는 미투 고발운동 이후에도 남성의 위계권력 구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한 편, 배제된 몫에는 청년 또한 존재함을 역설한다. 문예위는 가장 큰 규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원기관이자, 위원이 현장의 예술가 혹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민관협치라는 문예위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들은 문화예술계의 대표자라는 상징성을 띈다. 그러나 6기의 평균 위원 연령은 59.8세였으며 가장 연령이 적은 위원의 나이도 51세였다. 문화예술계에는 분명히 다양한 연령이 존재하지만, 위원 구성은 중장년층으로만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선임일 테지만, 지금의 방식은 '현장 예술인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의 정신과는 분명히 간극이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연령이 낮은 예술인은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청년들은 의견을 내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현행 체계 개선을 통해 청년 위원의 선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첨부한다.

□ 주요 내용 및 근거

1) 청년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필요

6기 위원의 평균 연령은 59.8세였으며, 내부 규정으로 조건이 완화된 민간위원까지 포함해도 52.2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종의 예술인의회이자 민간 위원은 예술인의 대표. 현재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음. 세대별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분명히 존재하는 청년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예술계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음.

[표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기 민간위원의 연령]

전체인원			79 명
전체평균나이 (세)			52.22 세
1940년대 생	2 명	1970년대 생	27 명
1950년대 생	18 명	1980년대 생	3 명
1960년대 생	29 명	1990년대 생	0 명

2) 새로운 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

2019년 11월 6일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효표본 666명 중, 예술활동과 예술의 변화에 대한 동의도 및 관심도 중 "탈장르, 융합장르화 등 전통적인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 활동이 늘고 있다"의 동의도는 5점 만점에 4.07점을 기록하였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콜렉티브 등 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3.81점을 기록 함. 반면, 예술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 중 "예술정책 결정시 예술계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는 1.92점 밖에 기록하지 못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르 중심적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위원의 추천도 협단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들은 장르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으며 협단체를 벗어나 다변화된 조직화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본인이 예술계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

함을 이야기함. 이는 청년들이 예술계 일원이자 미래세대임을 고려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 운영이 총체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낡을 틀에 얽매여 있음을 시사함. 이에 대해 학생 · 청년 쿼터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관점 반영이 필요.

3) 당사자로서 높은 이해도

2000년대 중반,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생계불안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며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와 복지영역으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지방자치와 문화예술계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상황. 실제로 예술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인당 부채액이 313만 원으로 분과 계열 중 가장 대출금액이 많고, 대출연체율 또한 23%로 매우 높은 상황. 이와 함께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가구 1년 총수입 3,000만 원 및 예술 소득 300만 원의 상황은 청년예술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그림1 한국의 예술대학생, 청년예술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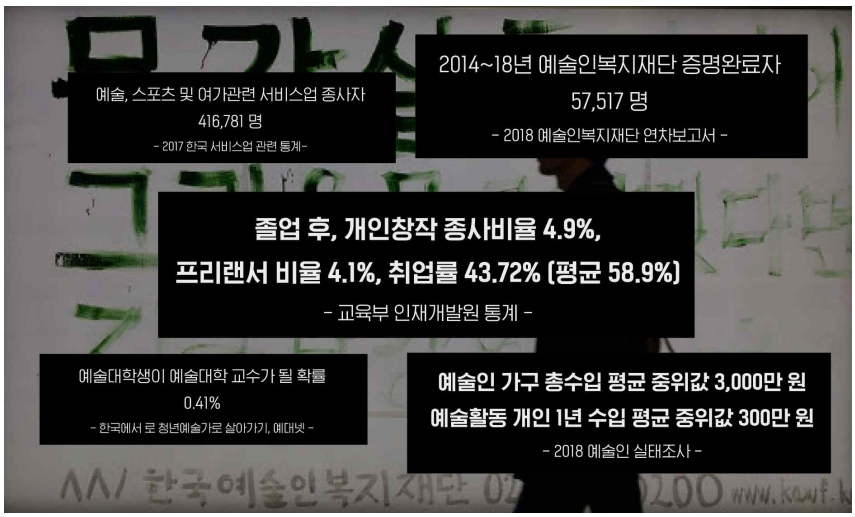

한편,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하고 성숙한 서구권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청년의 참여가 화두였으며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한국은 각종 의회와 협의체들이 청년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 편. 서울시의 경우 “청년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는 기조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 거버넌스들을 만들어 청년위원과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계획 중에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에도 학생 · 청년이 위촉된다면 당사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문화예술 전반에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고등예술교육 및 학생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

한 해, 예술계열 전공 졸업자 수는 54,080[5]명이며, 대학생 268만 명 중, 31만 명은 예술전공자. 이는 10명 중의 1명이 예술대학생임을 이야기함. 그렇지만 교육부 / 문화부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대학의 예술전공자가 겪는 교육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94.43%의 예술전공자들이 졸업 이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지만[6] 졸업 후 진입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계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은 편, 이는 이

5) 대학 + 전문대학 + 대학원 졸업생의 수, 2018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6) <2019 예술대학 현장성 관련 설문조사>, 2,193명 참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공계열이 1990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04년「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열지원 특별법」제정,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 인증> 등을 통하여 분과 진흥을 위해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 해당 현안에 대해 이해도 혹은 공감도가 높은 학생 · 청년 위원 선임을 통해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5) 청년예술가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축

행정가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이 정책 및 사업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현대는 거버넌스의 운영이 대두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부터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관. 그런데, 현재의 운영체제가 2005년의 포맷에 맞추어져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책 권고안으로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일진보한 거버넌스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 앞서 말했듯이 예술대학생과 청년예술가들의 의사가 조금 더 문화예술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 · 청년 위원은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

6) 타기관의 청년 참여, 거버넌스 사례 : 청년의 몫에 대한 할당은 시대적 흐름

2019년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연구>를 5월부터 진행하며 서울청년예술인 캠프 준비단을 발족하였음. 이후, 서울청년예술인 캠프 준비단은 10월 “청년예술포럼”, 11월 “제1회 서울청년예술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거버넌스 기구로서 청년예술가 당사자들이 직접 위원이되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위원회>와 청년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서울청년예술인 회의>를 정식 운영할 예정에 있음. 서울문화재단 외에도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생태계에 대해 고민하는 기구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네트워크"들도 있음.

청년의 몫에 대한 사회의 할당은 시대적 흐름이며,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현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함.

지정토론❹

공유자원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무책임의 순환구조를 깨자 -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지정토론④ 공유자원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책임의 순환구조를 깨자

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은 예고된 파행과정이다. 일차적으로 위원추천위 추천공고 직전에 실시되었던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2019. 8. 12.)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반복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한 검토사항들이 유보 혹은 장기과제 방식으로 미뤄지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쟁점은 2004년 법 개정과 이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 체계의 출범이 이루어진 2005년부터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왜 문제인가'가 아니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문제설정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토론문은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진 문제점을 구성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귀착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직접적인 인과관계에서 보면 가장 쉬운 답이긴 하지만 그 답이 내려진 지 10년도 넘는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일정정도 결과의 측면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든 나쁜 제도는 반드시 수정된다. 왜냐하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가 존속한다면 그 제도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속되는 것이다. 그럴 때 원인은 바로 그 이해관계의 구조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의 파행은 현행 위원회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힘, 즉 현재 문화예술(정책) 생태계 내의 기득권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토론문의 결론이다.

1. 2005년과 2007년, 2018년과 2019년

2004년 진흥원에서 위원회로의 전환을 담은 문예진흥법이 개정되고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TF가 운영되었다. 해당 자료는 현재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는데, 5차 회의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시론적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아르코출범준비TF 5차 회의자료(부분)

1) 조직의 명칭 : 문예진흥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 '진흥'이라는 어휘와 '문화예술'이라는 어휘는 적절한가?

2) 권력의 형식 :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 예술현장이 '정책 대상'에서 '동시적 주체'로 승격되는 것

3) 조직의 위상 :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에 대한 관리처
   * 문화적 가치란? 창의성 기타 (발원지가 예술이라면 최전선은 관광)
   * 예술이 왜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인가? ("한 사회의 문화체계 안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명 활동인 '예술 창조'의 영역이 고갈되면 '문화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적 자원은 고갈에 이른다.")

4) 조직의 임무 : 기초예술의 생명력을 높이다

* "기초예술 - '비(非)상업적 예술'이 아니라 당대문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 (본격예술, 순수예술이라는 어휘에서 간과되는 뉘앙스를 살리자는 취지)
* 우리나라 문화적 자원의 관리 차원에서 - 기초예술을 전담하는 기구와 산업예술을 전담하는 기구의 위상 및 지원형태를 동일한 컨셉으로 설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기적으론 지금보다 15년 전의 글이지만 확실히 동시대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지 않나. 그건 진흥원에서 위원회로서의 변화가 법률의 개정을 통한 기구의 출범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조금은 중기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이미 해볼 것은 다 해봤다'가 아니라 '왜 그 때 시작한 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가'라는 질문이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007년 공공기관법의 제정과 함께 2008년 2대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 건이다. 전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를 분리시키고 최소한의 합의제 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선임방식의 행정위원회로 전락시킨 제도적 힘이다. 이런 변화의 가장 파국적인 결과가 바로 2대 김정헌 위원장의 일방적인 해임이 '가능해졌다'는 바로 그 경험에서 확인된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했던 합의기구로서의 특징,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그리고 비당파적인 기초예술 보호 및 지원이라는 기능이 국가의 지원기관이라는 협소해진 행정기구로 축소되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결과를 '블랙리스트'라는 잔인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진흥원에서 위원회로의 전환은 형식적 전환과 실질적 전환이 이반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실패한 개혁의 흔적으로서 복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이후 만들어진 아르코혁신TF에서 다른 어떤 과제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조직의 변화를 가장 첫머리에 꼽은 것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역시 '왜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는가'라는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18년 아르코혁신TF에서 내놓은 혁신안은 조직혁신을 첫 번째로, 사업혁신을 두 번째로 제시한다. 그리고 조직혁신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르코혁신TF 보고서 중

1.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예술위를 '공운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실시하여 예술위 위원 구성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 단

○ 현행 예술위 비상임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 등「문화예술진흥법」의 절차에 따라 구성됨. 예술위 위원은 어느 정도 장르별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추천위원회의 장르별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려는 취지이나, **현재 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은 공모지원자 중에 심의해서 0배수를 추천하는 역할일 뿐** 추천기능은 없음

○ **현장성과 참여확대라는 취지를 볼 때 위원추천위원회에 의한 예술위 위원 구성 절차는 현장과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성별, 세대별 균형 등의 안배가 미흡**

* 예) 2,3,4차 위원추천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 28조 2항 각호 필수 고려사항 미충족

- 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위원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후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예술계의 대표

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한계가 매우 큼

○ 예술위 위원장은 2005년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에 따라 호선제로 선출되었으나, 2008년 「공운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문예진흥법 상 예술위원회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법제도적 모순 발생

-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함
- **정부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정책방향의 유동성 강화→예술위의 자율성 약화**
  → **지난 박근혜 정권에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

○ 국정과제로 논의되는 호선제 역시 위원추천위원회 주도의 예술위 위원 구성절차 개선 없이는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큼

제 안

○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위 위원 구성절차에 대해 개방성, 현장성, 민주성을 강화하여 참여적 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위원 선임과정이 현장으로부터 추대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

○ **단기적으로 현행 문체부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술위에 '위임'하고 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공모와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보장

- 타천 방식을 적극 활용하되 각 위원들의 활동계획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게 하여 활동 기반형 책임구조로 운영되도록 함

○ **장기적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예술위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위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예술인들이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 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10명 이상의 추천인 명부를 받거나 현장의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천방식 운영의 정교화 필요. 예를 들어 단체 소속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최소인원(10명 이상)으로 하되 후보자와 추천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천자는 중복해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예술위 위원구성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장 호선제 제도화를 병행**(「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 24조 제2항에 규정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를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

4. 다양한 예술현장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소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의 제안내용 중에서 1번은 장기 과제로 지정하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2~4번의 과제는 바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했던 사항이다. 이 중에서 2번의 공운법 제외는 TF 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1번의 국가예술위원회의 구성과 2번의 공운법 제외는 논리적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차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예술위원회를 주장했으니 그것이 아니면 모든 개혁은 무의미라는 편리한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국가예술위원회를 지향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며, 그 변화의 지향은 당연히 국가예술위원회의 가치와 비전의 부분적/점진적 달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2번의 과제인 공운법 배제는 멈춘 2005년 기관 전환에서 시작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질적 전환에서 장애물이 된 2007년 국면을 우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으며 질문으로 던져진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경로에서의 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로 상의 맥락에서 보면 2019년 하반기에 벌어진 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난맥은 하나의 단발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10년 넘게 유예되어온 전환의 과정이 변화라는 시간의 힘에 의해 밀어붙여진 반동의 파열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변화의 시간을 가져오기

발전이론가인 알버트 허쉬만은 <반동의 레토릭(번역제목: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통해서 변화를 가로막는 몇 가지 레토릭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그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로 그 레토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혁신TF의 다양한 안들은 3가지의 반동적 수사에 의해 미끄러져왔다. 당장은 이런 저런 한계 때문에 힘이 드니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만족을 하자는 현상유지적 힘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는 것을 인정하자.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그를 통해서 구성되는 관계도 공유재commons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기한이 정해진 사유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의 총체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네의 우물은 그것이 누구 것이라 하지 않더라도 우물이 말라버리면 식수를 구할 수 없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인해 공동의 관심사가 된다. 집에 우환이 있거나 식구가 늘어나면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우물의 물을 더 많이 길어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에 맞춰 다른 사용자들이 평소보다 적게 물을 길어가면서 우물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유지한다. 누구도 우물의 토대가 되는 수맥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그런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마을이 커진다면 새로운 우물을 찾아 두 번째의 우물을 만들어 낸다. 동네 이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마을우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이 국가와 예술인인 시민이 맺는 어떤 관계의 총제라고 한다면, 우물을 관리하는 '관료'들에게 주문을 하고, 해당 관료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물을 나눠주는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사유재의 변형에 가깝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인 시민들이 국가와 맺는 관계의 형식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구성방식은 그 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문제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2019년 11월의 국면에 고정된 어떤 사실들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2005년부터 지속되어온 전환의 과정에서 맥락화할 것인가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반동인가 혁신인가의 갈림길로 보는 것이 맞다. 계기적으로 지적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내용이나 성별 형평성을 갖추는 것 등은 아주 사소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금방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1) 위원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현행 주요 등록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천/타천의 풀로 개방하고 랜덤의 방식으로 성별/지역별 할당에 맞춰 추첨하고 (2) 위원후보자를 현행 자천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 동의서를 전제로 하는 추천방식을 병행하면서 (3) 2배수 후보명단을 제시할 때 각 장르별 추천위원을 현행 2배수가 아니라(그렇게 되면 성별 추천만 도드라지므로) 4배수로 초천하도록 하도록 하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라면 2019년 11월의 국면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상유지라는 기본적인 틀에 방법론만 갱신한 것으로 머문다. 오히려 본질적인 형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구 자체의 전환과정을 전제로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1) 현행 문예진흥법

상의 위원구성 권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임 후 장관의 추인과 임명방식으로 변경하고 (2) 위원장은 공운법상 변화를 고려해 위원 추천 이후 구성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이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3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들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각 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제로 고민해보면 좋겠다.

여기에 각 소위원회가 다양한 위원추천/자천을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소위원회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면, 적어도 소위원회의 일반위원들이 전체 위원추천위원회의 절반 정도를 채우도록 하고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풀을 통해서 할당 추첨하여 구성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장르별 후보추천방식을 배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르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꼭 추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장르별로 구분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추천과정을 통합장르 방식으로 구성하고 법상 장르별 안배를 고려하여 추천명부를 만든다. 해당 추천명부는 추천위원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되지만 해당 명부를 공개해서 사전에 등록한 현장예술인들의 참여단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관에서 차기 위원명단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검증한 후 결격이 있으면 결격사항을 통보해 명부를 보완하도록 하고 결격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부를 추인하고 임명한다.

이런 방식의 위원회 구성이 갖는 장점은,
(1) 과정 자체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된다
(2) 위원들의 권위가 장관의 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장예술인들의 추천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3) 위원들이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후 활동 평가가 가능해진다
(4) 옥상옥의 형식적인 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적어도 해당 임기 내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등의 집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위원들 간에 공동의 협업구조를 강화해서 장르별 무관심을 해소한다
등의 요소들을 들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장은 저런 로드맵의 절반 정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적 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고 그 질문의 당사자는 명확한 '설명책임'을 지닌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듣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데 있다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적절한 대답을 듣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참여가 보장되어 참여의 배제나 독점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단순히 위원의 선발과 관련한 과정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운영/사업 과정에서 개방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결정권한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한다. 정당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행정의 예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편적인 시민행정의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행정만큼 70년대의 일방향적인 진흥정책에서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영역이 있을까. 이건 예술의 예외성이 아니라 예술을 배제하는 것이고 예술인을 2등 국민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나. 마지막으로 역량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야 역량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득권은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버려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물때를 지게 하는 방법은 물을 계속 흐르게 두는 것이 상책이다. 변화의 시간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이제는 정말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끝]

지정토론❺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기관이 되길 원하시나요?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장

지정토론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기관이 되길 원하시나요?

● 어떻게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좋은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을까요?
● 좋은 위원님들이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 모신 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분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의 의견과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기서도 쟁점이 형성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일단 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7기 위원 후보자 16명 명단이 공개된 후에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1. 7기 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
   1)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협·단체, 기관 추천은 받고 개인 추천은 배제
   2) 위원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성별 문제와 청년층 대변 등 연령별 층위에 대한 지적
   3)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공개 검증의 문제. 블랙리스트와 미투에 대한 사전 공개 검증의 방식을 통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까? 후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없을까? 예술위 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문제인가? 예술위 위원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자리이고 역할이 있는 것일까?

긍정적 검증보다는 참으로 뒷말들이 많았습니다. 후보자들도 추천위원들(어떤 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추천위원이 되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도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었습니다. 급기야 '결국 누가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회자되었습니다.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들과 추천위원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 6기 위원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모두 같은 심정일겁니다. 이 말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6기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사과로 이어지니 면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합니다.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 7기 위원 전면 재선임 과정의 공론화를 지켜보면서

   1) 과연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있다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 안이 없다면 그 다음은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그 다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합의의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추천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선정 원칙 및 기준 공개
      7기 위원은 현행 법률 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추천위원구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핵심은 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가 입니다. 이 과정을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위원 구성과정과 명단 발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예술현장은 위원 선임이 정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일 수 있습니다. 현장은 이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의 과제입니다. 문체부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술위 또는 현장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가의 논의 주제 형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논의 과제는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명단과 논의 과정의 공개 여부입니다. 명단 공개는 사전 또는 사후에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논의 과제는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장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 차지하지 않게 하며, 청년층 대변하는 위원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와 그럴 때 현재 선정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문제, 지역 위원의 적정한 수의 문제 등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원 후보자 공개검증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문체부 메일로 검증 내용을 달라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3.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이하 현장소위)의 의견

첫 번째 논의 과제에 대해서 현장소위는 예술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술위와 공동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위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아르코혁신TF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견 수렴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단과 논의과정 공개의 문제입니다. 명단은 사후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 명단은 공개하면서 추천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추천위원회 회의록 전부 공개보다는 추천의 원칙과 기준 등이 담긴 요약 내용을 추천위원 명단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특정 성별, 청년층, 지역 위원의 문제는 층위가 다릅니다. 여성이 반드시 4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평등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준수 사항입니다. 현재 임기가 지속되는 6기 위원 여성 3분은 6기 위원 구성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사후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7기 위원 구성의 성별 원칙과는 무관한 비율입니다. 청년층의 문제는 우선 장벽이 되는 현장 경험 10년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젊은 예술인들과 지역 예술인들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예술인이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선정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 준수 사항이 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모에 응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내부에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역위원의 적정 수 문제는 예술정책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풀어야 될 정책과제입니다.

네 번째 후보자 명단 공개와 공개 검증방식의 문제입니다. 문체부가 후보자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단 공개 후 후보자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내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면?)와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 검증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다.

4. 7기위원 선출의 의미와 함의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1) 지난 6기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독임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시행착오를 통해 예술위의 정상화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1기 위원회로의 복원 및 재건의 기간이었습니다.
2) 앞으로 오실 7기 위원들은 합의제 예술위로 새롭게 출발하고 예술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기 위원은 2020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하여 위원 호선으로 2021년 11월 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3년 복원 등 관철시켜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7기 위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자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들을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7기 위원들은 예술지원 정책의 거대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창작 지원 예산 증액, 지원 사업에 대한 혁신, 예술정책의 전달체계 재편을 통한 변화된 정책 환경 선도(지원기관과 지역문화재단 등),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새로운 예술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제도 안착을 통해 예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국가·지역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위 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다음 같은 자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기금 및 예산 증액 – 정치력 요구, 정무감각 필요
2) 지원 공정 – 예술 전반에 대한 전문성 요구, 시대가 요구하는 신진·지역·여성 등에 대한 포용성, 특히 새로운 예술 및 대중예술에 대한 균형감각 필요
3) 사회적 가치 – 미래 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명의식 요구, 예술감각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예술위원의 처우와 권한, 책임을 현실화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처우(직급비 90만원+회의비), 권한(비상임, 월 1회 정례회의와 소위 회의 참여), 책임(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라는 오명 벗기와 예술지원에 대한 무한 연대책임). 처우와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술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명예나 봉사직 정도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먹고 살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면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딱 맞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임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고 투명해진다면 과연 얼마나 좋은 분들이 공모에 응하게 되실지 걱정됩니다. 좋은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열정 페이와 감정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자리에 감히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괴리도 문체부와 예술 현장은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제 위원회로서의 정상화는 처우 개선, 권한 재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책임과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좋은 분들이 많이 공모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토론❻

“적극적 조치” 의 필요성: 쿼터제 도입에 대해

강 윤 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지정토론⑥ “적극적 조치” 의 필요성: 쿼터제 도입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대 위원(1기부터 6기까지)은 총 63명으로 남성이 47명, 여성이 16명이다. 연령대 구성은 40대 13명, 50대 30명, 60대 17명, 70대 3명으로 5·60대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6기 위원으로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2005년부터 2019년, 무려 15년간 47 대 16 이라는 예술위원 남녀 성비가 유지되도록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지난 1년간의 예술위원회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예술을 전공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고, 예술가로 활동하는 여성이나 예술정책 기관이나 예술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왜, 예술위원의 구성은 16 대 47 이 아니라 47 대 16 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도입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적극적 조치는 원래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의 하나라고 한다. 오랫동안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이제 자유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상 불공정 하다는 것이다. 협단체 소속 활동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예술인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위원 역할 홍보는 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권유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술계 종사자 비율에 비례한 여성위원 선정이라는 “적극적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비로소 “공정한 경쟁”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곧, 소극적인 “차별 안 하기”가 아니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그렇지만 후보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 남성 중장년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남성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려 15년 간 47대 16이라는 불균형한 상황을 놓고 보자면 여성과 청년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역시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지원자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전체 사회가 얻는 이익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여성이 제자리를 차지하면 사회적 화합을 증진시키고 집단 간 분쟁과 갈등이 줄어들어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증가)에 비한다면 역차별의 손실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인구통계, 노동력통계, 특정 직위에 자격을 갖춘 여성비율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예 : 의과대학에 여성의 비율이 20%라면 의료기관의 의사충원에서 여성을 적어도 20% 충원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혀낸 것은 예술분야는 여성 전공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졸업 뒤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여성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비율에 맞게 예술위원 성별도 선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양성평등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정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여성이 60% 가까이 차지하는 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쿼터제 도입에 추가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성고용할당제와 청년고용할당제를 보자.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어떤 단체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다. 이는 주로 여성의 비율이 적은 직군 혹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라고도 불린다. 해당 제도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점차 민간 부문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더

불어 고용 목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 목표제는 3년 또는 5년 등의 기간을 정해두고, 최종 고용 목표를 그 기간 동안 시간표(timetable)에 따라 연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종 고용 목표가 30%라고 하면, 5년의 기간 동안 1차 연도에는 10%, 2차 연도에는 15%, 3차 연도에는 20%, 4차 연도에는 25%, 5차 연도에는 최종 목표인 30%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2018년 기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이 증가 추세이며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위촉직 위원)은 2013년 상반기 26%에서 2018년 하반기 42%까지 올랐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쿼터제 도입을 위한 추가 논의나 합의는 “적극적 조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예술계에서 왜 “추가 논의나 합의”를 통해서야 겨우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예술계 내외의 모든 요소들은 연결되어 있다. 예술위원회에 성평등 인식을 가진 여성예술위원들이 많아져야 예술지원 정책도 성평등해질 수 있고 여성예술가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여성예술가의 경력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정책의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디 여성분들이여, 예술위원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고 성평등한 세상을 관철해 주시라!